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42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4. 21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표창 대상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표창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

-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나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“(이중표창의 금지)”를“(표창의 제한 및 취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
2.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
3. 추천일 기준 3년 내 표창을 받은 자

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,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. 다만, 제6조 및 7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4조(이중 표창의 금지) 동일</u> <u>한 공적 또는 성적에 대해서는</u> <u>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.</u></p>	<p><u>제14조(표창의 제한 및 취소) ①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</u> <u>여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에</u> <u>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</u> <u>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</u> <u>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<u>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 수수,</u> <u>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</u> <u>매매,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</u> <u>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</u> <u>은 자</u></p> <p><u>2.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</u> <u>을 받은 자</u></p> <p><u>3. 추천일 기준 3년 내 표창을</u> <u>받은 자</u></p> <p><u>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</u> <u>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</u> <u>창을 취소하고, 이와 관련하여</u> <u>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</u> <u>수한다. 다만, 제6조 및 7조에</u> <u>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</u></p>

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최순기
연 락 처	02-3153-6173